



제418회 국회 (정기회)
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국·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근거 마련〉

■ 광규택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3218호)

2024. 12

법 제 사 법 위 원 회

전문위원 박 동 찬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1.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국·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근거 마련	3
※ 참고자료: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현황	9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광규택의원 등 12인
2. 제 안 일 : 2024. 8. 27.
3. 회 부 일 : 2024. 8. 2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단체로,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,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의 무상 사용이 필요함.

그러나 현행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,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35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광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21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국·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근거 마련

가. 개정안의 주요내용

- 개정안은 등록법인(현행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)¹⁾의 설치·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등록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(안 제35조의2).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제35조의2(국·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법인의 설립·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등록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·수익의 내용,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나. 검토의견

□ 현행법²⁾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“범죄피해자 지원법인”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,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○ 등록법인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률·심리상담, 경제적 지원, 수사 기관 및 법정 동행, 병원후송·응급진료·치료, 구조금 신청 등 법률 구조 지원, 관련 조사·연구 및 교육·홍보, 또는 대피시설·보호시설

1)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34조(보조금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(이하 “등록법인”이라 한다)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(이하 각 항 생략)

2)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3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3. “범죄피해자 지원법인”이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.

제33조(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)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「민법」과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한다.

제34조(보조금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(이하 “등록법인”이라 한다)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(제2항 생략)

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」 제42조의2(보조금의 교부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1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
2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, 실태조사, 연구, 교육,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
3.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

등의 운영 등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, 변호사·의사 등 해당 전문분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한 활동이 가능한 사람,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관련 기관 또는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일정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하며,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업무를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·시설 등 자산을 보유하여야 함.³⁾

- 현재 전국 등록법인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0개, 전국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, 부산스마일센터,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등 총 63개이며, 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법무부 사업을 통해 매년 운영비 및 인건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음. 또한, 56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검찰청사

3) 「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」 제41조(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)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세 종류 이상의 활동을 법인의 목적으로 할 것
 - 가.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·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
 - 나.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
 - 다. 수사기관 및 법정에 범죄피해자와 동행
 - 라. 범죄피해자의 병원후송·응급진료 및 치료
 - 마. 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금 신청과 「법률구조법」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구조 신청에 대한 안내 등 법률구조 지원
 - 바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교육·홍보
 - 사.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
 - 아.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활동
2. 법인의 임원·직원 중 10명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 - 가. 변호사·의사 등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·의료 등 해당 전문분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한 활동이 가능한 사람
 - 나. 「법률구조법」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 - 다. 정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3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업무를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 등 자산을 보유할 것

(이하 각 항 생략)

내에 위치하고 있음⁴⁾.

- 검찰청사는 「국유재산법」 제6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이자 국유재산임.⁵⁾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나⁶⁾, 동법 제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정부 출자·출연 법인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.⁷⁾ 그러나 현재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63개는 모두 비영리 민간 법인이며, 정부 출자·출연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

4) 참고자료(p.10) 참조

5) 「국유재산법」 제6조(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)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용재산: 국가가 직접 사무용·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(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

(이하 각 호 생략)

③ "일반재산"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.

6) 「국유재산법」 제32조(사용료)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.

7) 「국유재산법」 제3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

1의2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
2.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

3.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

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3조(공공단체의 범위)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

1.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

2.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

「국유재산법」을 근거로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임.

○ 한편,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⁸⁾에서는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, 동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 동법 별표는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 법률, 특례유형 및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,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상 등록법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.

○ 따라서, 등록법인이 국유재산인 검찰청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,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징수·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상사용하고 있으며,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음.⁹⁾

8)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국유재산특례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.

1. 「국유재산법」 제32조제1항,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, 대부료,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(이하 "사용료등"이라 한다)의 감면
2.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(이하 "장기 사용허가등"이라 한다)
3. 「국유재산법」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

제4조(국유재산특례의 제한)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.

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.

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.

9) 2019년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시정요구: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연합회의 검찰청 청사 무상사용 문제 개선 필요(시정 및 제도개선)

2021년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시정요구: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 청사 무상사용 문제 개선 필요(제도개선)

2023년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시정요구: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검찰청사 무상사용 법적근거 조속히 마련 필요(제도개선)

- 이에 개정안은 등록법인의 설치·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등록법인이 검찰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범죄피해자 지원 재원의 유지 및 기관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이 법률안은 등록법인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21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, 해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안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.
- 참고로,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,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
02)6788-5051

※ 참고자료 :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현황

연번	명 칭	소재지	검찰청 내/외
1	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	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07호	내
2	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	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B110호	내
3	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	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102호	내
4	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	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312호	내
5	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	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219호	내
6	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	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별관102호	내
7	경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113호	내
8	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검 제1신관 243호	내
9	고양·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기 고양시 고양지청 414호	내
10	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	인천시 남구 인천지검 1125호	내
11	부천·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기 부천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101호	내
12	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지검 207호	내
13	성남·광주·하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검 성남지청 별관 152호	내
14	여주·이천·양평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기 여주시 수원지검 여주지청 101호	내
15	평택·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기 평택시 수원지검 평택지청 108호	내
16	안산·시흥·공명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검 안산지청 807호	내
17	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검 안양지청 106호	내
18	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	강원도 춘천시 춘천지검 111호	내
19	강릉 범죄피해자지원센터	강원도 강릉시 춘천지검 강릉지청 113호	내
20	원주·횡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	강원도 원주시 춘천지검 원주지청 107호	내
21	속초 범죄피해자지원센터	강원도 속초시 춘천지검 속초지청 109호	내
22	영월 범죄피해자지원센터	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 1길 34	외
23	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	대전 서구 대전지검 209호	내
24	홍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	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 318호	내
25	공주·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	충남 공주시 대전지검 공주지청 102호	내
26	논산·부여·계룡범죄피해자지원센터	충남 논산시 대전지검 논산지청 304호	내
27	서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	충남 서산시 대전지검 서산지청 312호	내
28	천안·아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	천안시 동남구 대전지검 천안지청 102호	내
29	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	충북 청주시 청주지검 208호	내
30	충주·음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	충북 충주시 청주지검 충주지청 108호	내
31	제천·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	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179 오화빌딩 2층	외
32	영동·옥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	충북 영동군 청주지검 영동지청 107호	내
33	대구·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	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2315호	내
34	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	대구 달서구 대구지검 서부지청 114호	내
35	경북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북 안동시 대구지검 안동지청 115호	내
36	경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북 경주시 대구지검 경주지청 305호	내

연번	명 칭	소재지	검찰청 내/외
37	포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북 포항시 북구 대구지검 포항지청 213호	내
38	김천·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북 김천시 김천로 150. 2층	외
39	상주·문경·예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북 상주시 대구지검 상주지청 109호	내
40	의성·군위·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북 의성군 대구지검 의성지청 209호	내
41	영덕·울진·영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북 의성군 대구지검 의성지청 209호	내
42	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	부산시 연제구 부산지검 117호	내
43	부산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	부산시 해운대구 부산지검 부산동부지청 417호	내
44	부산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	부산시 강서구 부산서부지청 413호	내
45	울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	울산시 남구 울산지검 별관 122호	내
46	경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남 창원시 창원지검 322호	내
47	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남 진주시 창원지검 진주지청 207호	내
48	통영·거제·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남 통영시 창원지검 통영지청 102호	내
49	밀양·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남 밀양시 창원지검 밀양지청 212호	내
50	거창·합천·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	경남 거창군 창원지검 거창지청 별관	내
51	마산·함안·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	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검 마산지청 402호	내
52	광주전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	광주시 동구 광주지검 209호	내
53	목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	전남 목포시 광주지검 목포지청 108호	내
54	장흥·강진 범죄피해자지원센터	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43	외
55	전남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	전남 순천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526호	내
56	해남·완도·진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	전남 해남군 광주지검 해남지청 별관 2층	내
57	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	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 신관 152호	내
58	군산·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	전북 군산시 전주지검 군산지청 별관 103호	내
59	정읍 범죄피해자지원센터	전북 정읍시 전주지검 정읍지청 412호	내
60	남원·순창·장수범죄피해자지원센터	전북 남원시 전주지검 남원지청 11호	내
61	제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	제주도 제주시 제주지검 216호	내
62	부산스마일센터	부산 금정구 금샘로 371	외
63	한국피해자지원협회	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4길 25	외